

행정절차론 총평

- 이준희 행정사 / 박문각 행정절차론, 행정사실무법 전임

1. 2024 행정절차론 전반에 대한 분석

1) 시험 난이도(상/중/하)

- 1문 물음1) - 상 (핵심요약집 p.15)
- 1문 물음2) - 중 (핵심요약집 p.18, 19)
- 2문 - 중 (핵심요약집 p.75, 76)
- 3문 - 상 (핵심요약집 p.86, 87)
- 4문 - 상 (핵심요약집 p.98)

2) 전체 총평

문제 난이도만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**작년에 비해서는 어렵게 출제**되었습니다. 먼저 문제1 법의 물음2를 제외하고는 **기출 논점에서 다시 출제된 문제는 없었다는 점**과 각 개별법에서 **조문 위치상 뒷 부분이 출제되었다는 점**에서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평가합니다.

2. 각 문제별 분석

- 1번 문제의 물음 1의 경우**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사업자(甲)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며 따라서 **甲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에 해당**합니다.
- 1번 문제의 **물음2의 경우** 불수리처분의 乙에 대한 절차이므로 **거부처분의 절차가 논점**입니다. 따라서 처분의 **사전 통지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지만**, 처분의 **이유 제시의 절차는 거쳐야** 합니다.
- 2번 문제는**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경우 **일반 분쟁조정절차도 당연히 적용**됩니다. 개인정보보호법상 조문은 **집단분쟁조정절차를 별도로 두고** 있지만, 시간이 가능하다면 **분쟁조정절차 전반을 써주시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** 있습니다.
- 3번 문제와 4번 문제**는 문제에서 **제시한 목차를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**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러나 **핵심요약집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쓰셔도** 괜찮습니다.

3. 수험 전략

행정절차 사례는 최근 들어서 **기본 개념에 대한 부분을 논점으로 구성**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**논점별 작성해야할 답안을 미리 준비**하여 암기하는 것은 물론 기계적 암기가 아닌 **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** 자신이 아는 만큼의 답안 작성을 하기가 힘듭니다. 즉 **기본이론 과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**됩니다. 또한 **판례를 변형한 문제가 출제**되므로 판례에 대한 정확한 학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.

**약술 문제**의 경우 적어도 **핵심요약집의 내용은 빠짐없이 보셔야** 합니다. **각 개별법**의 경우 깊게 정리하기 보다는 **넓게 정리하는 방법**이 수험에는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.

행정절차론(행정절차법 포함)

【문제 1】 甲은 그의 소유인 A시 소재 건물(이하 ‘이 사건의 건물’ 이라 한다.)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해 오던 중, 甲의 지방세 체납으로 이 사건 건물이 압류되었다. 乙은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,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, 관할행정청인 A시장에게 위 유흥주점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.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르면, 관할행정청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40점)

물음 1)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을 설명한 후, A시장이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할 경우 그 수리처분에 있어서 甲은 「행정절차법」상 ‘당사자등’ 이 되는지 검토하시오. (20점)

1.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

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할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이다. 따라서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, 이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. 행정청이 공표한 처분기준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, 문서로 처분과 그 이유를 명시하고 구제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. 이는 처분 당사자등의 절차적 권리이며, 당사자의 개인적 공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.

2. 당사자등

1) 개념

당사자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의미한다.

2) 자격

- (1) 자연인
- (2) 법인,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
- (3)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·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

3) 사안의 적용

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

승계할 수 있다. 본 사안에서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A시장의 수리처분은 乙이 甲의 지위를 승계하므로, 종전의 영업자인 甲은 영업자지위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에 해당한다.

-끝-

물음 2) A시장이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그 불수리처분에 앞서 乙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 및 제23조(처분의 이유 제시)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검토하시오. (20점)

### 1. 사전통지

#### 1) 대상

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2) 사전통지의 면제사유

- (1)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(2)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
- (3)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
#### 3) 거부처분

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.

### 2. 이유제시

#### 1) 의의

처분의 근거가 된 법적·사실적 사유를 처분 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
#### 2) 대상

- (1) 원칙
  -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.
- (2) 면제사유
  - ①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
  - ② 단순·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
  - ③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### 3. 사안의 해결

처분의 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. 이유제시의 경우 특별히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.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지만, 제23조(처분의 이유 제시)의 절차는 거쳐야 한다.

-끝-

【문제 2】 「개인정보보호법」상 ‘집단분쟁조정’의 실시요건과 이에 대한 분쟁조정 위원회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. (20점)

**1. 집단분쟁조정의 실시**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, 정보주체,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50명 이상의 정보주체(이미 구제가 끝났거나 구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정보주체는 제외)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.

**2. 처리절차**

**1) 개시 공고**

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하며,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.

**2) 처리기간**

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3) 대표자 선정**

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다.

**4) 보상계획서 제출 권고**

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**5) 조정절차에서의 제외**

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,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.

-끝-

【문제 3】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절차를 설명하고, ‘이의신청 취하’와 ‘이의신청 각하’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. (20점)

**1. 약식재판**

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.

**2.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**

**1) 신청 기간**

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이때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.

**2) 신청 방식**

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, 법원은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.

**3)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**

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, 법원은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.

**3. 이의신청 취하와 각하**

**1) 이의신청 취하**

이의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는 정식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. 이의신청의 취하는 이의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. 다만, 심문 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다.

**2) 이의신청 각하**

법원은 이의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.

**3) 공통점**

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와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약식재판을 확정한다.

-끝-

**【문제 4】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상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신고에 관하여 설명하십시오. (20점)**

**1. 자율신고제도**

- 1)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- 2)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.

**2. 자율관리체제의 구축**

- 1)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·관리하고, 스스로 법령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.
- 2)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자가 법령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는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
- 3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법령등의 준수를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.

**3.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**

행정기관의 장은 자율신고를 하는 자와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준수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·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

- 이 하 여 백 -